

조합업무 안내(2)



1. 보증(융자)채무 약정

가. 약정의 의미

건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를 발급 받거나 융자를 받기에 앞서 약정인과 연대보증인(법인의 대표자 개인 또는 최대주식보유자)이 조합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과 조합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모든 약정조항을 승인한 후 약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약정의 종류

(1) 한도거래용 보증(융자)채무약정

조합원별 보증 및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 체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전자약정 가능)

(2) 개별거래용 보증(융자)채무약정

한도거래용채무약정과는 달리 매 거래마다 체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단, 공사이행보증, 어음보증 및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은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에 의한다.

※ 융자한도액 인상으로 인한 추가약정시에는 한도거래용 채무추가약정서에 의한다.

다. 약정체결시 구비서류

(1) 지점(영업소) 방문시

(가) 약정인

법 인	1. 약정서(조합소정서식)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법인인감증명서
개 인	1. 약정서(조합소정서식)	2. 개인인감증명서	3. 본인확인증(조합소정서식)

※ 해외현지법인 명의의 보증서 발급을 위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설립(인수) 증빙서류

(나) 연대보증인

구 분	약정인 대표자	최다주식보유자
개인	1. 개인인감증명서 2. 본인확인증(조합서식)	1.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사본 2. 개인인감증명서 3. 본인확인증(조합소정서식)
법인	-	1.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사본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본인확인증(조합서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자연인으로서 조합직원 입회하에 약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2) 전자약정시

(가) 약정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는 범용공인인증서로 같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지점(영업소)에서 출력하므로 제출 생략

(나) 연대보증인

구 분	약정인 대표자	최다주식보유자
개인	개인인감증명서는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로 같음	1.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사본(모사전송가능) 2. 개인인감증명서는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로 같음
법인	-	1.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사본(모사전송가능)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지점(영업소)에서 출력 3.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로 같음 4.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는 개인 범용공인인증서로 같음

(3) 약정체결 시 유의사항

(가) 전자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법인 및 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나) 약정연대보증인이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조회결과 채무불이행정보 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입보가 불가합니다.

(다) 약정연대보증인이 신용회복지원, 회생절차개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용자 등 약정인의 기존채무를 포함하여 출자지분액 범위내에서만 입보할 수 있습니다.

(라) 약정체결 후 다음의 사유 발생시 약정을 갱신하여야 업무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약정인의 출자금액 감소(약정좌수 감소)
- 연대보증인 입보자격의 상실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의 변경

- (마) 약정체결 후 다음의 사유 발생시 약정갱신 없이도 감소된 약정금액(보증·용자 한도액)이 적용되어 업무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단, 2014. 8. 1 이후 새로 약정을 체결 또는 갱신한 조합원에 한함)
 - 약정인의 신용등급 하락
 - 결산지분액의 변동으로 보증한도액 감소
 - 조합제도 등의 변경으로 보증한도액 감소
 (※ 이 경우 조합은 약정금액 변동(감소)통지를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함).
- (바) 보증거래약정과 용자거래약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 (사) 조합과의 보증(용자)업무거래에 사용할 인감(사용인감은 1개에 한함)은 신고하여야 하며, 약정서에는 반드시 원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아) 약정체결시 조합 직원 입회하에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1.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범용공인인증서로 서명하여 전자약정을 체결한 경우 3.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의 약정한도 내에서 해외현진법인 명의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조합원의 대표자와 최다주식보유자에 한하여 생략)

라. 연대보증 조건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자격 또는 최다주식보유자(최다주식 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자격을 동시에 입보)가 연대보증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전자약정체결 후 조합창구를 통해 업무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 대표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항상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1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의 조정 또는 신용평가등급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보증잔액이 보증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을 하지 아니합니다.

2. 보증한도

가. 신용등급별 보증한도

구 분	신 용 평 가 등 급									
	가산배수 적용	AAA	AA	A	BBB	BB	B	CCC	CC	C
합 계	26배	22배	19.5배	18배	16배	15배	14배	12.5배	11.5배	11배
입찰보증 (소액보증)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구 분	신 용 평 가 등 급									
	가산배수 적용	AAA	AA	A	BBB	BB	B	CCC	CC	C
일반보증 (입찰보증제외)	15배	11배	9배	8배	6.5배	6배	5.5배	4배	3배	3배
지급 및 기타보증	6배	4배	3.5배	3배	2.5배	2배	1.5배	1.5배	1.5배	1배
(손해배상·리스보증) (어음·자재구입보증)	(각1배)	(각1배)	(각1배)	(각1배)	(각1배)	(각1배)	(각1배)	(각0.5배)	(각0.5배)	(각0.5배)

- ※ “일반보증”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을, “지급보증”은 선급금보증, 유보기성금지급보증, 어음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을, “기타보증”은 손해배상보증, 인·허가보증, 자재구입보증, 임시전력수용 예납보증, 리스보증을 말합니다.
- ※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의 보증금액이 건당 1백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인 경우 입찰보증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증한도 계산방법

보증한도 계산방법 : 담보좌수 × 보증배수 × 좌당지분액(946,480원)

- 50좌 조합원이 AAA등급의 경우
 - 입찰보증 : 331,268,000원(50좌 × 946,480원 × 입찰 7배)
 - 계약보증 등 : 709,860,000원[50좌 × 946,480원 × (일반 11배 + 지급 4배)]
 - 지급 및 기타보증 : 189,296,000원(50좌 × 946,480원 × 지급 4배)
 - ※ 매 회계년도의 좌당 결산지분액은 익년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 지급 및 기타보증의 여유한도 중 이용하지 않는 한도에 대하여 일반 보증에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용자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 “나의 (1)”과 같이 출자지분액의 5배인 236,620,000원을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가산배수 적용).
 - ※ 지급 및 기타보증의 여유한도는 용자금이용에 따라 차감됩니다.

나. 보증한도 가산배수 적용

신용평가를 받은 조합원이 기 이용중인 용자금을 용자한도의 20% 단위로 상환하거나 부동산 등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별 보증한도를 포함하여 최고 출자지분액의 26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입찰 보증을 제외한 일반보증한도는 15배까지, 지급·기타보증은 6배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이용 지급 및 기타 보증한도는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 보증한도로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운영자금 미이용 또는 상환시

신용운영자금을 이용하지 않거나 상환한 경우 용자한도의 20%마다 출자지분액의 1배씩 최대 5배까지 일반보증에 가산하거나, 아래 표와 같이 일반보증 및 지급 및 기타보증에 안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산배수 중 신용등급별 보증별 안분배분표

신용 등급별	보증별	기본배수	가산배수별 안분 배분율				
			1배	2배	3배	4배	5배
AAA	일 반	11	0.692	1.384	2.076	2.768	3.46
	지급·기타	4	0.308	0.616	0.924	1.232	1.54
AA	일 반	9	0.696	1.392	2.088	2.784	3.48
	지급·기타	3.5	0.304	0.608	0.912	1.216	1.52
A	일 반	8	0.70	1.40	2.10	2.80	3.50
	지급·기타	3	0.30	0.60	0.90	1.20	1.50
BBB	일 반	6.5	0.706	1.412	2.118	2.824	3.53
	지급·기타	2.5	0.294	0.588	0.882	1.176	1.47
BB	일 반	6	0.734	1.468	2.202	2.936	3.67
	지급·기타	2	0.266	0.532	0.798	1.064	1.33
B	일 반	5.5	0.77	1.54	2.31	3.08	3.85
	지급·기타	1.5	0.23	0.46	0.69	0.92	1.15
CCC	일 반	4	0.78	1.56	2.34	3.12	3.90
	지급·기타	1.5	0.22	0.44	0.66	0.88	1.10
CC	일 반	3	0.78	1.56	2.34	3.12	3.90
	지급·기타	1.5	0.22	0.44	0.66	0.88	1.10
C	일 반	3	0.80	1.60	2.40	3.20	4.00
	지급·기타	1	0.20	0.40	0.60	0.80	1.00

(2) 현금예치 및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현금 및 부동산 등 조합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의 3배(단, 출자지분액 1배 이내)를 일반보증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30% 한도 내에서 지급 및 기타보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담보물에 의한 거래

각 담보물의 종류 및 거래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주식

대용가격의 90%이내. 다만, 대용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상장 주식은 평균가격의 60%이내

(2) 정기예금증서

액면금액의 100%이내(정기적금증서는 불입고의 100%이내)

(3) 부동산

- 공시지가, 주택가격확인원, 과세시가표준액 등
- 부동산의 종류 및 지역별 담보인정 비율

종 류	지 역(%)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시	군
단독주택	70	70	65	60
공동주택	70	65	60	60
아파트	80	75	70	60
근린생활시설	70	60	60	55
공장	60	55	50	45
기타 건축물	65	65	60	55
토지	70	70	65	60

주)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함.

- 부동산의 종류별 내용

종 류	내 용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근린생활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것을 포함
기타 건축물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운동시설, 업무시설(공공업무 시설 제외), 숙박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토지	대, 공장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주) 부동산의 종류별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되, 토지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의함

(4) 국·공채

대용가격의 90%이내

(5) 보증사채

액면금액의 90%이내

(6) 공사대확정채권

양수확정채권의 80%이내

3. 보증수수료 요율

보증별	단위	신용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계약보증	연%	0.26	0.32	0.34	0.36	0.36	0.38	0.38	0.40	0.40
공사이행보증	연%	0.15	0.225	0.325	0.45	0.45	0.475	0.475	0.5	0.5
하자보수보증	연%	0.195	0.24	0.255	0.27	0.27	0.285	0.285	0.30	0.30
선급금보증	연%	0.52	0.64	0.68	0.72	0.72	0.76	0.76	0.80	0.80
손해배상보증	건당%	1.20	1.275	1.275	1.35	1.35	1.425	1.425	1.50	1.50
인·허가보증	연%	0.80	0.85	0.85	0.90	0.90	0.95	0.95	1.00	1.00
자재구입보증	연%	0.63	0.675	0.72	0.765	0.81	0.855	0.90	0.90	0.90
임시전력수용 예납보증	연%	0.64	0.68	0.68	0.72	0.72	0.76	0.76	0.80	0.80
리스보증	연%	1.20	1.275	1.275	1.35	1.35	1.425	1.425	1.50	1.50
유보기성금 지급보증	연%	0.32	0.34	0.34	0.36	0.36	0.38	0.38	0.40	0.40
어음보증	연%	1.20	1.275	1.275	1.35	1.35	1.425	1.425	1.50	1.5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연%	0.64	0.68	0.68	0.72	0.72	0.76	0.76	0.80	0.80
포괄대금 지급보증	연%	0.64	0.66	0.68	0.70	0.72	0.74	0.76	0.78	0.80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	건당%	2.31	2.56	2.61	2.67	2.72	2.77	2.83	2.88	2.99
입찰보증	건당%	0.03								
최저수수료	원	3,000								
소액보증	계약보증	연%	0.8							
	하자보수 보증	연%	0.6							
	최저 수수료	원	6,000							

※ 특별할인·할증은 사유별로 산출수수료의 20%범위내 할인 및 100%범위내 할증

4. 보증 제한

조합원이 업무거래증지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을 하지 아니합니다.

가. 업무거래증지 사유로 인한 보증제한

- 각종 보증금 청구를 받았을 때
- 조합에 대한 채무를 조합이 지정한 배상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용자금이 연체된 때(입찰보증 제외)
- 공사대 양도 승인기관의 일방적인 취소 또는 승인조건 행사
- 제세공과금을 체납하였을 때

- 할인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였을 때
- 제거래 약정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 조합원의 부도·금융거래 불량, 용자금 연체, 노임의 장기 체불, 자재대 장기 미지급 등 조합원의 신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조합 채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나. 업무거래정지 사유로 인한 보증제한

- 출자증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되었을 때
- 은행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당해 면허 또는 등록업종에 한하며 영업정지 이전에 조합에서 발급한 계약보증의 계약금액 변경 및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보증서와 하자보수보증서는 발급가능)

다. 기타 보증제한

- 정액입찰보증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될 때 정액입찰보증만 제한
 - 발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낙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할 때까지
 - 보증서를 발급한 당해연도에 3회 이상 또는 10매 이상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신고일로부터 3개월까지
- 건설업양도와 관련하여 조합이 의견서를 발급한 때
-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또는 어음보증을 받은 후 어음발행인이 지불정지 또는 부도 처분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 등 신청을 한 때
- 동일공사에 대하여 자재구입보증, 선급금보증, 어음보증, 또는 시공자금 용자금 중 각각의 보증 또는 용자가 중복될 때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조회결과 채무불이행 정보 대상으로 분류된 때(법인인 경우 연대보증하지 않은 대표자 포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규칙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종료된 때. 다만, 조합에서 보증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보증과 하자보수보증은 보증가능
- 신용평가 유효기간이 종료된 때
- 국세체납 처분유예 사실이 확인된 때
- 당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예정 등 조합 채권보전상 필요할 때 



조합업무 묻고 답하기

보증업무

보증 이용중인 잔액과 남아있는 보증여유한도는 어디서 조회 가능한지?

☞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지점 → 영업정보서비스 → 업무거래현황에서 현재 이용중인 보증잔액과 보증여유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증잔액은 해제되지 않고 계류중인 잔액을 의미합니다.

보증서를 발급한 세부내역(이용현황) 조회는 어디서 하는지?

☞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지점 → 영업정보서비스 → 보증이용명세에서 '현재시점'으로 조회시 현재 계류중인 보증 내역이 나타나며, '발급시점'으로 기간조회시 해제된 내역까지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보증한도 부족시 한도를 늘리는 방법은?

☞ 보증잔액이 부족하여 보증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한도를 늘릴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①, ②, ③, ④의 방법으로도 한도부족시 ⑤ 출자좌수 증자를 하셔야 합니다.

- ① 기존 발급한 보증건 중 해제가능한 보증 해제
- ② 선급금보증 등 지급보증 한도는 용자금 상환하여 한도증액
- ③ 신용등급이 상향되었는데 약정은 이전 등급

- 으로 되어있는 경우 약정갱신하여 한도증액
- ④ 용자금 미이용시 또는 상환시 보증배수가산제 이용
- ⑤ 출자좌수 증가

보증수수료를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는지?

☞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지점 → 영업정보서비스 → 보증수수료계산에서 보증종류, 계약금액,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입력 후 산출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조합원의 신용등급에 따른 수수료요율이 적용되어 보증수수료가 산출됩니다(단, 고액보증 특별심사, 공사이행보증 특별심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에 추가할증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 내용에 수정사항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미승인 보증신청인 경우(당일) : 인터넷 온라인지점의 '보증신청수정/신청취소'에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단, 보증금액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취소 후 재신청만 가능합니다.

☞ 승인(발급완료)된 보증의 경우

- 계약건명, 보증채권자명, 계약일, 계약이행기일, 보증기간 변경 : 오타나 착오로 잘못 신청하여 승인(발급)이 완료된 경우 기재사항변경신청에서 해당항목을 수정하여 신청하시면 기재사항변경된 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단, 기존에 발급된 계약보증의 변경계약으로 계약

이행기일 및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는 공기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액 변경시 : 보증금액 변경은 기재사항변경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당초 보증서를 취소처리하시고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변경계약으로 보증금액 증액 또는 감액 시에는 취소·재발급이 아닌 추가보증 또는 감액보증으로 처리)

계약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계약보증잔액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 계약보증은 보증기간이 경과되어도 자동 해제되지 않고 다음의 경우에만 해제 가능합니다. ① 보증채권자의 준공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때 ② 조합에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③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에 의거 그 준공을 확인할 수 있을 때 ④ 다른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준공된 사실을 확인한 때 ⑤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때(2011. 11.25 기준으로 이전 발급건은 소멸시효 5년 적용, 이후 발급건은 소멸시효 2년 적용)

보증기간이 지나 준공처리된 공사임에도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보증내용을 확인 후 위 자료를 제출하시면 즉시 처리해드립니다.

인터넷 보증을 잘못 신청하거나 신청중 오류발생시 신청단계(승인전)에서 수수료 결제가 된 건은 조합에서 신청취소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해 조합원의 결제계좌로 당일 환불됩니다.

☞ 인터넷보증을 잘못 신청하거나 신청중 오류발생시 신청단계(승인전)에서 수수료 결제가 된 건은 조합에서 신청취소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해 조합원의 결제계좌로 당일 환불됩니다.

잘못 신청하였는데 보증승인이 완료된 건은 관할 지점에 연락하여 보증취소 처리를 하고 수수료는 환불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발급된 보증건에 대하여 증액 또는 공기연장시 어떻게 신청하는지?

- ☞ 증액시 : 증액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및 보증금액으로 '추가보증신청'하면 조합에서 추가보증서를 발급해드리고 이 경우 당초 보증서와 연계되어 보증효력이 발생합니다.
- ☞ 공기연장시 : 변경된 계약이행기일로 '공기연장신청'하면 조합에서 공기연장보증서를 발급해 드리고 당초 보증서와 연계되어 보증효력이 발생합니다.
- ☞ 증액·공기연장시 : 위 두가지 경우의 보증서가 각각 발급되고 당초 보증서와 연계되어 보증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장의 공기연장 또는 추가 보증서를 한 장으로 통합하여 발급이 가능한지?

☞ 동일공사의 계약보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공기연장 또는 증액의 대상이 되는 원보증서들을 각각 공기연장 또는 증액 신청을 한 후 통합출력보증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출력보증서에는 기존 발급된 보증서의 보증금액, 보증기간이 통합 기재되어 발급되고 통합출력보증서의 별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지점 방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보증(G2B) 신청시 계약(관리)번호가 틀리다고 나옵니다.

☞ G2B 보증신청 화면의 계약(관리)번호 입력시 숫자 또는 영문 사이에 바표시(-)등 특수문



자는 입력하지 마시고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 ☞ 보증채권자가 군부대인 경우 계약(관리)번호 앞에 dapa를 붙여야 합니다.
- ☞ 보증채권자가 한국도로공사인 경우 계약(관리)번호 앞에 ex를 붙여야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증신청 화면의 'G2B 안내'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선급금지급보증은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 2013.9.4부터 선급금지급보증에 관계없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단, 선급금공동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한도초과인 경우, 영문표기보증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므로 지점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영문표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 입찰보증(정액입찰보증 제외),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지급에 한하여 영문표기 보증서 발급(지점 방문)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액과 계약금액은 원화로 표기하되, 필요시 외화보증금액을 병기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보증(G2B/B2B)이 무엇이며 전자보증이 가능한 기관은?

☞ 전자보증이란?
조합원사의 보증서 발급 및 제출의 편리를 위해 조합과 보증채권자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

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증신청과 보증서 제출이 가능한 전자전송방식(B2B/G2B)을 의미합니다.

☞ 전자보증이 가능한 기관 또는 회사는?
조합과 전자보증협약이 체결된 공공기관 또는 건설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조달청, 한전 및 한전계열사 12개사, 현대건설 외 민간건설사 약 40개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기계대여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서 발급이 불가한지?

☞ 건설기계 사용요청시 대여계약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가 없는 대여건은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대 계약시 대여횟수 미정의 이유로 대여계약 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증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 건산법의 보증금액 산출방식에 따라 대여계약금액을 확정해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간 주 ○○회 또는 월 ○○회 또는 사용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 후 대여횟수 및 금액이 증가된 경우 증액된 보증금액으로 추가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대 계약인 경우도 보증서 발급 대상인지?

☞ 일대 계약도 보증서 발급 대상입니다. 단, 당일 사용, 당일 대금결제인 경우는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건설기계대여계약이 보증 대상인지?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1건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서 면제대상의 공사도중 대여금액 증액시 보증서 발급대상에 해당되는지?

☞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증액되는 시점에서 보증서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원도급자가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할 경우 보증 면제대상인지?

☞ 원도급자 직불은 보증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보증서 미제출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 영업정지처분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이 부과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포괄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인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도 면제되는지?

☞ 포괄대금지급보증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건산법 제68조의3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대상 건설기계는?

☞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27종)를 말하며, 유사장비라 하더라도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는 장비는 보증대상이 아닙니다.(예: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보증 가능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제출받아 등록된 대여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은 그 대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아닌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나머지 구성원(연명등록자)은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명등록자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명등록자 소유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상 '대여업체 및 사용본거지'가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상의 '상호 및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상의 최종소유자는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연명 등록자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여부는?

☞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가 (가)압류 상태인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 기계 대여에 문제가 없으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압류 관련으로 기계사용의 문제발생 시 채권자(기계대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제업무

산재보험 미가입시 근재보험 가입가능여부?

☞ 반드시 산재를 가입한 업체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재상품의 보상범위가 산재를 초과하는 보상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 산재 사고처리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재가입시 1인당 1억원을 보상한도로 가입했는데 사고시 1억원을 보험금으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 1억원을 정액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1억원은 보상한도이므로 사고로 인해 산정한 손해배상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직만 근재를 가입한 경우 내근직 사원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여부는?

☞ 내근직 사원에 대하여 별도로 근재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내근직 사원에 대한 공제요율은 현장직 대비 20%대에 불과하므로, 내근직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조합원께서는 연관계약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원수급인이 여러개인 경우 어느 회사를 원수급인으로 하나요?

☞ 각각의 도급비율을 확인한 후 도급비율이 큰 업체를 원수급인으로 입력합니다. 필요시 추가기재사항 란에 나머지 공동수급인의 입력도 가능합니다.

공사장별계약인 경우, 세부 공사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 확인되는 부분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성공단의 경우는 당연히 우편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에는 조합원 본사 주소를 등록해 주시고, 추가기재사항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영업배상책임공제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 손해액 중에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 금액을 말하며, 보험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이 자기부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액을 설정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빈번한 작은 손해 사고에 대해서 재해조사나 이재처리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보험계약자에게는 자기부담금액 설정에 따른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 위함입니다.

※ 보험금 = 손해액(배상책임액) - 자기부담금액

기타업무

거래지점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사업장 주소지 변경 등으로 거래지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거래하고 있는 지점에 업무이관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지점 → 영업정보서비스 → 업무이관신청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지점방문시에는 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업무이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 주소지 변경시 조합에서 처리할 사항은?

☞ 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의 ‘출자주명부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다운하셔서 변경전, 변경후 사항을 기재하시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점에 제출(FAX가능)하시면 변경처리해드립니다. 또는 조합 온라인지점→영업정보서비스→출자주명부기재사항변경신청 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자좌수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용자금잔액증명원 등 민원서류의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화면 좌측부분에 결산증빙서류출력을 클릭하시면 결산서류출력 화면이 열립니다. 기준일 및 해당 민원서류를 체크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온라인지점→인터넷민원서류발급에서 각 증명원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자(약정연대보증인) 변경시 조합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 첫째, 출자주명부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용평가 재평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조합과 약정체결중인 경우 약정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넷째, 용자금을 이용중인 경우 용자금 대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각 업무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 지점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약정체결시 대표자가 반드시 조합에 방문해야 하는지?

☞ 약정연대보증인에 해당하는 대표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는 조합직원 입회하에 본인이 직접 약정서에 기명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인터넷으로 약정체결 하는 경우는 범용공인인증서(법인, 대표자 모두 필요)를 통해 전자서명하므로 조합 방문없이 약정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편리한 인터넷 약정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조치 방법은?

☞ 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는 조합원번호 5자리이고(예:01234) 관할 지점에 전화하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분실시에는 조합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송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